

제 1465 그 1호  
1989. 12. 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 공보관 유 천 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 시 보

## 차 례

◎ 공문시행  
 품종관리전환소요조례 ..... 3

◎ 조 례  
 제2545호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 ..... 4  
 제2546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 ..... 4  
 제2547호 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조례의 ..... 5  
 제2548호 서울특별시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 ..... 6  
 제2549호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위원회시세과세면제조례개정조례 ..... 6  
 제2550호 서울특별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  
 조례개정조례 ..... 7

(이면 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007

제2551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7
제2552호	서울특별시제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7
제2553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8
제2554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8
제2555호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입자의대대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9
제2556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업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9
제2557호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9
제2558호	서울특별시태풍등재해로인하여채취득하는부동산등에대한특별시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9
제2559호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채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9
제2560호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때다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10
제2561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10
제2562호	서울특별시점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10
제2563호	서울특별시한국마사회에대한마권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폐지조례	10
제2564호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및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폐지조례	11
제2565호	서울특별시올림픽대회음악파트등의기부금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11
제2566호	서울특별시올림픽공원및올림픽선수촌등건설에따른이주대상자의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11
◎ 고 시		
제 56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1
◎ 구 고 시		
제 10 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12
제 11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변경허가	12
제 2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시행허가	12
제 29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시행허가	13
◎ 구 공 고		
제 8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공람공고	14
제 11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4
◎ 사 령		

## 공 문 시 행

(관 인 생 략)

서울특별시

재 정 01710-44124

710-3341

'89. 12. 29.

수 신 : 산하전기관

제 목 : 물품관리전환 대상품목 소요조회

1. 용산 우수배제 펌프장 철거 및 이설공사에 따라 발생한 물품중  
사용가능한 펌프의 8개 품목에 대하여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요청하오니 회당  
부서에서는 90년 1월 15일까지 소요 요청바랍니다.

2. 위기일내에 소요 요청이 없을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3. 관리전환 소요조회 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취 득일	현 상 태	비 고
펌프(양흡입보류트)	φ 1,000×130/분	4 대	1942년	중고품	
모 타 ( 농 형 )	300HP	4 대	1974년	"	
수 제 수 변 문	φ 1,000 %	4 대	1942년	"	
수 배 전 반	모타기동반4면의3면	7 대	1974년	"	
변 압 기	750 K.V.A	3 대	1974년	"	
C . T	23.9(K.V)	3 대	1974년	"	
O . C : B	24(K.V)/500MVA	1 대	1973년	"	
G . F . T	22.9(K.V)/110(V)	1 대	1965년	"	
M . O . F	22.9(K.V)/190(V)	1 대	1970년	"	

○ 회당부서 관리전환 요청 연락처 : 용산구청 재무과. 끝.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45호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과세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면제) ①사업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사업회에 대하여는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사업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개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사업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46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중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예신금리"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국고입부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로 한다.

제2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각호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한다.

<p>1.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 평가가격의 100분의 6</p> <p>2.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 평가가격의 100분의 8</p> <p>제28조중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시중은행”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등고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로 한다.</p> <p>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양여받거나 양여받은 폐천부지등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재지·지목·면적과 가격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법등 특별회계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p> <p>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37조와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89. 12. 30.</p> <p>서울특별시 시장 고건 ㉔</p> <p>●서울특별시조례제2547호</p> <p>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1항중 “5월”을 각각 “7월”로 한다.</p> <p>제73조제1항중 “시행규칙 제104조의5”를 “시행규칙 제56조의2”로 한다.</p> <p>제74조제2호중 “법 제234조의10제2항”을 “법 제154조제2항”으로 한다.</p> <p>제77조중 “영 제194조의5”를 “영 제106조”로 한다.</p> <p>제78조제1항중 “영제195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를 “법 제235조”로 하고 “재산세과세대상(이하 “재산세과세대상”이라 한다)에”를 “재산세과세대상과 법 제234조의 25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과세대상(이하 “재산세과세대상등”이라 한다)에”로 하며, 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상”을 각각 “재산세과세대상등”으로 한다.</p> <p>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8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p>	
<p>과 세 대 상</p> <p>토 지</p> <p>건 축 물</p>	<p>과 세 기 준 일</p> <p>매년 6월 1일</p> <p>매년 5월 1일</p>	<p>납 기</p> <p>10월 16일 ~ 10월 31일</p> <p>6월 16일 ~ 6월 30일</p>

제87조제1항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로 한다.

제88조 단서중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을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로 한다.

제90조중 "재산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 대장등"으로 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 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신체장애자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48호

서울특별시신체장애자용승용차에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장애자의 복지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중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자가 1,500cc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철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과세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제2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발급한 심신장애자수첩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서울사업지원위원회신체과세면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시장 고 건 ㉕

◎서울특별시조례제2549호

서울특별시서울사업지원위원회신체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서울사업지원위원회신체과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다음목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육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50호

서울특별시육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육성나환자 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부동산을 무상양여하는 경우”를 “부동산을 양여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51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중 “1월이내”를 “2월이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불균일과세등) ①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각각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3월, 보존등기가 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 이전등기(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52호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단서를 삭제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거나 재개발사업인 가조건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재개발사업시행 인가권 받은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53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괄호중분류번호 "70호"를 "70, 116, 117, 119, 121, 122, 126, 127, 131호"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54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취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55호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입자의매매용  
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 매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시  
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56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과  
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태양  
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57호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태풍  
등재해로인하여대체취득하는부동산등에대한  
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58호

서울특별시태풍등재해로인하여대체취득  
하는부동산등에대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태풍등재해로인하여대체취득하  
는 부동산등에대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공공사  
업수행시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59호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증 개 정 조 례**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수행시 대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철도 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다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60호**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 다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철도건설공유지분 분할등기에 다른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시 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61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집인 계약저제도실시에다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62호**

서울특별시집인계약저제도실시에다른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집인계약저제도실시에다른 시세불 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한국 마사회에대한면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내 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63호**

서울특별시한국마사회에대한면세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한국마사회에대한면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및올림픽조직위원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64호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및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및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올림픽대회용아파트등의기부금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65호

서울특별시올림픽대회용아파트등의기부금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올림픽대회용아파트등의기부금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올림픽공원및올림픽선수촌등건설에따른이주대상자의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66호

서울특별시올림픽공원및올림픽선수촌등건설에따른이주대상자의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올림픽공원및올림픽선수촌등건설에따른이주대상자의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56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03호(89.8.24)로 도시계획사업(도로) 변경인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업 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중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28.

서울특별시장

<p>가. 사업시행위치: 중구 회현동1가 100-84-117-1번지간</p> <p>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사업의 명칭: 회현동1가 100-84-117-1번지간 소방도로 개설공사</p> <p>다. 사업의 규모: 폭 6m, 연장 180m</p> <p>라.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청(중구청장)</p> <p>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인가일로부터 1989. 12. 30까지 ○변경: 인가일로부터 1990. 12. 31까지</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세목조서: 별첨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게재생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width: 100px;"> <p>구 고 시</p> </div>	<p>◎중구고시제10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p> <p>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69호(89. 11. 1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된 기존학교(리라국민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27. 중 구 청 장</p>															
<p>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지적승인 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30%;">시 설 명</th> <th style="width: 20%;">위 치</th> <th style="width: 20%;">규 모 (㎡)</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r> <td>기 정</td> <td>학 교</td> <td>중구 예장동 8번지 일대</td> <td>3,394.3</td> <td>감 382.12</td> </tr> <tr> <td>변 경</td> <td>"</td> <td>"</td> <td>3,012.18</td> <td></td> </tr> </table>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	비 고	기 정	학 교	중구 예장동 8번지 일대	3,394.3	감 382.12	변 경	"	"	3,012.18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	비 고												
기 정	학 교	중구 예장동 8번지 일대	3,394.3	감 382.12												
변 경	"	"	3,012.18													
<p>나. 고시도면: 관할구청 비치 도면과 같음</p>																
<p>◎중구고시제11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 변경허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810호(89. 12. 2)호로 사업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25조에 의거 동사업변경허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27 중 구 청 장</p> <p>○변경 고시내용</p> <p>1. 사업시행지: 중구태평로1가 60-18의 2필지 2.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변경허가</p>	<p>3. 사업 명칭: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신축공사</p> <p>4. 사업 기간 변경전: 85. 12. 2 - 89. 12. 31 변경후: 인가일로부터 90. 12. 31</p> <p>*변경사유: 시설계획현장(주차타워등) 검토 등으로 공사지연</p> <p>*기타사항: 금회 변경전 내용과 동일</p>															
	<p>◎성북구고시제26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시행허가</p> <p>1. 서울시 고시 제185호(80.5.30), 같은 고시 제278호(81.7.27) 및 같은 고시 제140호(82.4.10)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되고,</p>															

<p>성북구 고시 제13호(87.12.18) 및 같은 고시 제3호(87.3.31)로 변경허가된 바 있는 성북구 정릉동 산17-6 주변일대 성한학원(대일중·고교)의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신청 허가하고 같은 법 제24조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9. 12. 28 성 북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성북구 정릉동 산17-6외 4필지 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p> <p>다. 사업의 명칭: 성한학원(대일중·고교) 교지조성 및 시설증축</p> <p>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p> <p>1) 교지조성 및 진입로 공사 - 교지조성: 7,467㎡ - 교사3층 1동증축: 연면적 6,293㎡</p> <p>2) 운동장 확장 - 운동장 조성: 7,600㎡</p> <p>3) 체육관 시설 및 운동장 조성 - 운동장 조성: 3,865.9㎡ - 체육관 시설 1동 증축: 3,320㎡</p> <p>마. 사업시행자 주소: 성북구 정릉동 산 16-1 성명: 학교법인 성한학원이사장 김성민</p>
---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금회 변경사항)

구 분	위 치	사 업 기 간		
		당 초	변 경	비 고
교지조성 및 진입로 공사	성북구 정릉동 산16-1외 2필지	80. 5. 30 -	80. 5. 30 -	사업기간 연 기
		89. 12. 30.	90. 12. 30.	
운동장 확장	성북구 정릉동 산17-6외 1필지	81. 7. 27 -	81. 7. 27 -	"
		89. 12. 30.	90. 12. 30.	
체육관 시설 및 운동장 조성	성북구 정릉동 산17-6	82. 4. 10 -	82. 12. 30 -	"
		88. 12. 30.	90. 12. 30.	

사. 위치 및 평면 계획도: 별첨(도면생략)

아.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성한학원(수용할 토지없음).

### ◎송파구고시제29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시행허가

1. 송파구 고시 제72호(88.12.23)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된 송파구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05블럭 일대의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

시행허가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과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시행을 허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

니다.

1989. 12. 27

송 파 구 정 장

가. 사업시행지 : 송파구 가락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05-1브락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여  
객자동차정류장)변경시행

다.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4,066㎡
- 건축면적 : 400.8㎡
- 건축 연면적 : 1,751.13㎡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59-5  
신흥교통(주) 대표이사 임성빈의 1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87. 7 - 88. 12. 30
- 변경 : 87. 7 - 90. 4. 2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  
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생략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

아. 시행허가 설계도서 - 별첨(생략)

**구 공 고**

●성동구공고제84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60(89.5.12)호로 결  
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사업시  
행허가묘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에 의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련 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전화  
450-1385)에 비치하오니 본 사업계획에 따  
른 의견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1989. 12. 28  
성 동 구 정 장.

사업의 종류	위 치	사 업 내 용	시 행 자	공람기간
도시계획사업  (학교)	성 동 구  발 장 동 533일대	대지면적 : 6743㎡ 건축면적 : 기존 : 3155.15㎡ 변경 : 3817.55㎡ (중 : 662.40㎡)	사외관리법인 구경희 대표 조 상 모	88. 12. 90. 1. (11일간)

●송파구공고제118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 승인한 도시계  
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저  
도시계획법 제25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2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길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  
리과에 배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  
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 공고 기간내 공람장소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9. 12.  
송 파 구 정 장



◎1990년 1월 1일자 기능직 공무원 특별 임용 형 제491호

성 명	발령부서	발령호봉	발령직급	비 고
유 은 정	공 보 관	1	지방사무보조원(조무) 시보(기능직 10등급)	신 규
최 봉 진	시경학국교통과	1	지방사무보조원(탁자) 시보(기능직 10등급)	"
김 상 호	"	1	지방운전원시보 (기능직 10등급)	"

기능직 공무원 특별 임용 형 제492호

성 명	발령부서	발령호봉	발령직급	비 고
양 정 숙	기획담당관	1호봉	지방사무보조원(탁자) 시보(기능직 10등급)	신 규
최 진 아	감사1담당관	"	"	"
이 시 연	총 무 과	"	"	"
최 문 경	행 정 과 (시민생활보호대책본부요원)	"	"	"
한 수 경	행 정 과 (지방자치추진반요원)	"	"	"
신 은 숙	인 사 과	"	"	"
이 해 순	"	"	"	"
김 묘 희	"	"	"	"
신 명 희	시 민 과	"	"	"
장 선 향	운 수 1 과	"	"	"
김 장 숙	운 영 과	"	"	"

서울특별시  
◎1989년 12월 27일자 기술직 공무원 인사 발령 형 제20호

인비 번호	성 명	제 칭			현 직		
		부 서	위 직	직 급	부 서	위 직	직 급
1	김진호	영등포수도 사업소	누수방지 과장 직무대리	지방토목 기사	관 약 구		지방토목 기사
2	이명희	서부수도 사업소	"	"	강 서 구		"
3	임영중	중부수도 사업소	"	"	영등포 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